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09
----------	-------

발의연월일 : 2025. 10. 30.

발 의 자 : 안도결 · 김동아 · 정진욱
박민규 · 박균택 · 이용선
양부남 · 정준호 · 김우영
윤준병 · 이언주 · 김원이
서삼석 · 최혁진 · 정태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나, 송전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원 부족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사업 완료 즉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제1항에 따른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조건과 절차, 설비의 양도·양수 방법 및 비용의 산정·정산, 지정의 효력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시행자) (생 략)	제3조(사업시행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전사 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 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 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 충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 정을 받아야 한다.</u>
<u><신 설></u>	<u>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2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사업 완료 즉시 해당 개 발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 력망 설비를 제1항에 따른 송 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 건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송전 사업자는 이를 양수하여야 한 다.</u>
<u><신 설></u>	<u>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 정의 조건과 절차, 설비의 양도 · 양수 방법 및 비용의 산정 ·</u>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전력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략) <u><신설></u> 2. ~ 9. (생략) ③ ~ ⑥ (생략)	<u>정산, 지정의 효력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u> 2. ~ 9.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